

2024년 입주희망자 BK생활관 입주 신청 안내

1. 입주 신청 기간 : 입주희망월로부터 6개월 이전부터 수시 신청 가능

※ 2024년 8월 입주를 희망할 경우, 2024년 2월부터 신청 가능

2. 입주 자격 및 절차

구분		교원	연구원	대학원생, 연구생
국적별 입주신청자격	외국인	(총장발령) - 전임 및 비전임 -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	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	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
	내국인	(총장발령) - 전임교원 - 전일제 비전임 교원* -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	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	입주 불가
건물유형별 입주신청자격	A동 (가족실, 56.26㎡)	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		입주 불가
	B동 (스튜디오, 23.02㎡)	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(자녀 거주 불가)		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(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)
신청 제한		① 「서울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」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서울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는 자 ③ 입주예정일이 BK생활관 직전 퇴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④ 대학원생에 한하여 관악학생생활관의 BK생활관 거주 경험이 있는 자 ⑤ 교원 및 연구원에 한하여 운영실무위원회 심의에 의해 사용이 불가하다고 인정된 자		
신청/등록절차		통합행정 시스템 신청 매뉴얼에 따라, 입사신청→입주신청을 진행함		
신청 기간		입주희망월로부터 6개월 이전부터 수시 신청 가능		
발표 일시 및 방법		공실 발생시 수시 선정 및 발표		
입주 허가 기간		최소 1개월 이상 최대 2년 (교원 및 연구원은 임용기간 유지 시, 대학원생(연구생)은 학적 유지 시) ※ 거주 연장 기간은 운영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이내 연장 가능 - 대학원생 1회, 교원 최대 총 거주 기간 7년, 연구원 총 거주 기간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		

- * 비전임 교원 구분(근거: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)
 - 전일제: 강의교원, 연구교원, 산학협력중점교원
 - 비전일제: 겸임교원, 외래교원
 - 전일제 또는 비전일제: 초빙교원, 객원교원

3. 생활관비 및 할증료(2024.03.01.시행)

(단위: 원)

A동(가족실)						
보증금	관리비	할증료 (거주 연장 승인 시)		부가금 (기간 만료 이후 연장 승인 없이 거주 시)		
		3년 초과 4년 이하 (20%)	4년 초과 (40%)	3년 이하 거주 세대	3년 초과 4년 이하 거주 세대	4년 초과 거주 세대
1,995,300	665,100/월	133,000/월	266,000/월	1,200,000/월	1,333,000/월	1,466,000/월

(단위: 원)

B동(스튜디오)						
보증금	관리비	할증료 (거주 연장 승인 시)		부가금 (기간 만료 이후 연장 승인 없이 거주 시)		
		3년 초과 4년 이하 (20%)	4년 초과 (40%)	3년 이하 거주 세대	3년 초과 4년 이하 거주 세대	4년 초과 거주 세대
1,260,300	420,100/월	84,000/월	168,000/월	600,000원/월	684,000/월	768,000/월

- 입주 해당 월의 경우 입주일에 따라 관리비가 상이
- 「관악학생생활관 시행세칙」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무단입주로 간주하여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있고 퇴거 완료일까지 부가금을 부과한다.

4. 유의사항

1) 신청

대학원생은 본인과 배우자 2인이 B동(스튜디오)에 거주 할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, 동반 가족사항에 배우자 정보를 입력해야함

2) 입주 자격 상실

- ① 지정된 기한 내에 서류 제출과 관리비 납부를 모두 완료하지 않을 경우,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, 입주자격 상실
- ② 서류 제출 시, 위장전입 또는 입주자격, 동반거주자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주 자격 상실
- ③ 거주하는 동안 퇴거대상자 관련 사유가 발생할 경우, 자진 퇴거해야 하며 적발 시 즉시 강제 퇴거 조치 됨
- ④ 호실 무단양도 및 대리입주로 적발될 경우, 즉시 강제 퇴거 조치

구비 서류 안내

- 입주 예정일 기준 **3개월 이내 발급분** 제출
-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**본인 기준**으로 발급
- 내국인의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**서울특별시 재산세(전체) 과세(납세) 사실**이 없어야 하며, 과세연도는 2년분을 설정하여 발급받아야 함
- 구비 서류를 외국에서 발급 받을 경우 **영문**으로 발급 받아야 하며, 기관의 **직인**이 찍혀 있는 경우만 유효함

□ 상황별 제출 서류

○ 신청 시

1. 외국인 교원 및 연구원이 A동(가족실)을 신청할 경우

- 본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+가족관계증명서,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+ 가족의 여권 사본 각 1부

2. 외국인 교원 및 연구원이 B동(스튜디오)을 배우자와 같이 거주할 경우

- 본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+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증명서 + 가족의 여권 사본

3. 외국인 교원 및 연구원이 B동(스튜디오)을 단독 거주할 경우

- 본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

4. 외국인 대학원생(연구생 포함)이 B동(스튜디오)을 신청할 경우
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증명서 + 배우자의 여권 사본 + (해당자) 배우자의 재학 관련 증명서

5. 내국인 교원 및 연구원

- 본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 +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 + 가족관계증명서
※ 미혼 또는 이혼일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본인 것만 제출

6. 내국인 교원 중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 근무 중인 자

- 본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+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+ 가족관계증명서 + 소속기관의 연구년 활용 증빙 서류(소속기관 직인 포함)
※ 미혼 또는 이혼일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본인 것만 제출

7. 내국인 교원 중 초빙교원, 객원교원의 경우

- 본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+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+ 가족관계증명서 + 소속기관의 전일제 교원 증명 서류(소속기관 직인 포함)
※ 미혼 또는 이혼일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본인 것만 제출

○ 입주 시

1. 제출서류

- 건강진단서(필수 항목: 흉부 X-ray 검사)
- 홍역예방접종 증명서

2. 유의사항

- 건강진단서 및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관련 상세 안내 사항은 붙임 2 참조
- 건강진단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만 유효
- 외국인의 경우 'BK Residence Halls Health Certificate(Form)'을 의료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제출 가능
※ 단, 병원 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경우만 유효

▣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학생생활관 행정실(전화 02-881-9038)로 문의 바랍니다.

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

건강진단서 및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안내

1. 건강진단서 관련 안내

- 1) 진단서 유효 여부
 - "진단서", "건강진단서"로 발급받아야 함
 - 결과서, 소견서, 통보서, 확인서 등 제출 불가
 - 보건소, 종합병원, 내과에서 발급한 진단서로, 기관명칭, 기관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
 - 종합 판정란 정상자에 한해 입주 가능
- 2) 검진 항목
 - 결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흉부 X-ray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 - 의료 기관별 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항목이 다를 수 있음(필요 검진 항목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함)
- 3) 진단서 유효기간 : 입주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검사 결과만 유효

2. BK Residence Halls Health Certificate (Form) 작성 방법(외국인)

- 1) 필수 검진 항목: 1번 항목 + 2번 항목 중 PPD 또는 Chest X-ray는 반드시 포함
- 2) 유의사항
 - 외국인이 한국에서 건강진단서 및 홍역예방접종증명서 발급하기 어려울 경우, Health Form으로 대체 가능
 - Health Form은 병원기관에서 작성 후 병원기관의 기관명, 주소, 전화번호, 직인을 받아야 함

3. 홍역예방접종 증명서(홍역 면역력 여부 검사) 관련 안내

- 1)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발급
 -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(nip.cdc.go.kr)에서 발급하는 '예방접종증명서' 출력
- 2) 접종 사실 확인 (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만 유효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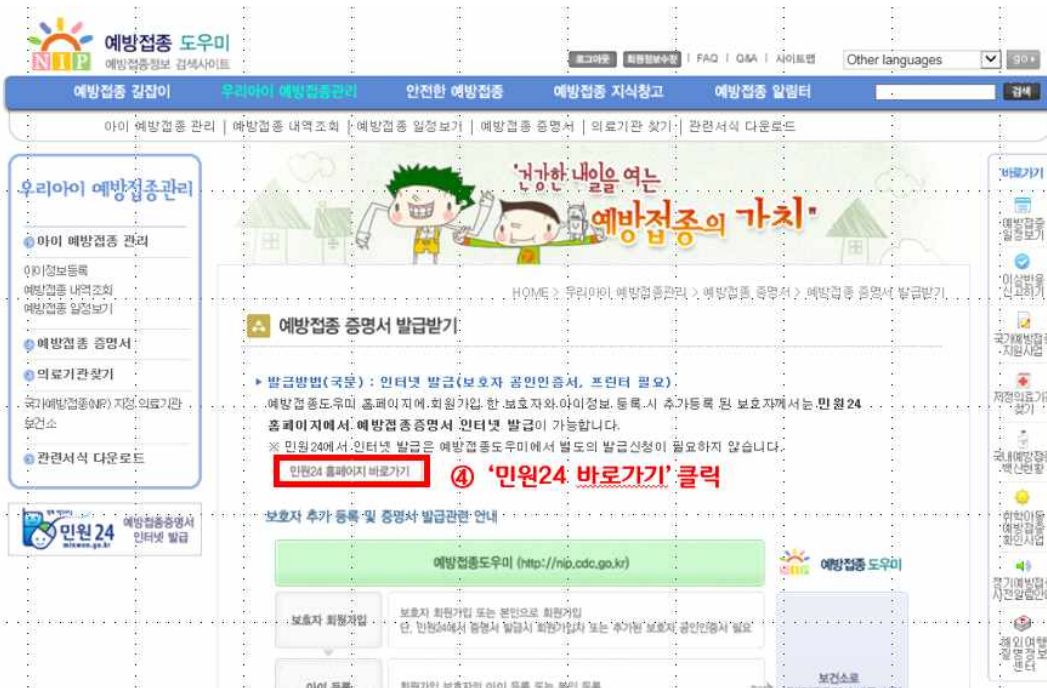
구분	제출 서류
홍역 접종 사실이 확인된 경우	'예방접종증명서' 제출
접종 사실은 있으나 내역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	항체 검사를 실시한 후 '홍역항체검사 결과서' 제출 ※ 접종한 병원을 알고 있는 경우,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'홍역예방접종 확인서'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
접종 사실이 없는 경우(미접종자)	홍역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'홍역예방접종 확인서' 제출 ※ 미접종자의 경우 서류제출 기간 전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접종 사실을 확인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

3)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출력 방법(접종 사실 확인 방법)

① 예방접종도우미(nip.cdc.go.kr)접속 > 회원가입 > '예방접종증명서발급' 클릭



② 민원24 홈페이지로 이동



⑤ 증명서 출력 및 접종 내역 확인

문서확인번호:



제 호			
예방접종증명서 Certificate of Immunization			
성 명 Name		생년월일 Date of Birth(Month/Day/Year)	19 년 월 일
		성별 Sex	여
주 소 Address			
접종명 Vaccine	접종차수 Vaccination Series	접종일자 Date Given(Month/Day/Year)	접종기관 Provider/Clinic
MR	1	2001년 6월 20일	기관미상
- 이 하 허 백 -			
↓			
<p>① 84년 이전 출생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접종차수가 2차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<p>② 85년 이후 출생자</p> <p>가. 접종일자가 2000년 이후인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접종차수가 1차로 표기되어 있어도 무방함 - 해당 서류 제출 가능 <p>나. 접종일자가 2000년 이전인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접종차수가 2차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- 2차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, 해당 서류 제출 불가 - 2차 접종 사실 확인 또는 추가 접종 후 '홍역예방접종 확인서' 제출 			
<p>「감염병의 접종하였음을 We hereby ectious Dise e above-ment</p>			
<p>※ 이 증명서의 접종내역은 [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]에 등재되어 있는 접종내역입니다. ※ 증명서에 누락된 내역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			



◆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, 민원24(minwon.go.kr)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(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) 또한 문서해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(스캐너를 문서확인프로그램 설치)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출력 방법

① '민원24' 접속 및 로그인 > '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' 검색



② '세목별과세증명' 신청



③ 미과세증명으로 신청

민원신청

- 인터넷 민원신청
 - 인터넷 신청 전체민원
 - 인터넷 발급민원
 - 즉시 발급민원
 - 수수료 감면민원
 - 인터넷 열람민원
 - 법인/재외국민/외국인민원
- 민원복지서비스
- 어디서나 민원
- 기업지원 전용창구

자주찾는 민원정보

- 주민등록표등본(초본)교부
- 전입신고
-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
- 병적증명서
- 토지(임야)대장열람/등본
-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
- 자격도(임야도)열람/등본
- 건축물대장등/초본발급

일련 도용되는 서비스

- 금융잔단 개설됨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 자동차 검사 예약 소비자 신고센터 신고 접수 금융주소 한번에 변경

민원신청 문의전화번호

- 세목별과세 증명
- 세목별과세 증명(방문수령)
- 세목별납세 증명(방문수령)
- 미과세증명**

'미과세증명' 클릭

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 신청

신청내용

구분* 개인 주민등록번호표기방법* 전체표기 일부표기

개인* 성명* 신상인 생년월일*

주소* 기본주소 주소검색

상세주소

과세연도* 2018년 ~ 2019년

사용목적*

명업장

상호

명업종목 검색

명업주소 기본주소 주소검색

상세주소

수령방법

수령방법* 검색 온라인발급(본인출력) 수령기관선택 검색

발급부수* 부

신청일 2019년 01월 17일

* 여러 건을 신청할 경우 민원번호에 담으면 한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.
 * 임시 지정은 회원은 일주일동안, 비회원은 브라우저 종료시까지 보관됩니다.

③ '민원신청하기' 클릭 민원신청하기 민원바구니담기 임시저장 취소

④ 과세건물지 주소선택(ex.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로 지정) > 민원신청하기 클릭 과세연도: 2년분 설정

과세연도 2018년 ~ 2019년

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

주소검색

② 서울시 주소 입력
ex)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

① '검색' 클릭

주소검색

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를 모르면? [www.juso.go.kr](#)

▶ 올바른 민원신청을 위해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.

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관악구

주소 관악로1 검색

[입력방법] 건물번호란?

- 도로명주소는 도로명 + 건물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함.
-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때는 읍면동 명칭을 입력하지 않음.
- 예) 세종대로161, 남산로17번길47 (숫자여 쓰기)

※ 2014.1.1부터 원칙적으로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해야 함. 다만,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 지번 주소를 사용할 수 있음.

▶ 선택한 도로명주소(법정동)안내

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(신림동)

▶ 민원처리기관을 선택해 주세요 | 검색결과 : 12 건

민원처리기관(법정동)

-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동(신림동)
-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(신림동)
-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동(신림동)

※ 도로명주소의 특성상 1개 이상의 행정처리기관주민센터, 구청 등지 존재 할 수 있습니다.목록에서 민원처리를 요청할 기관을 선택해주세요.

⑤ 재산세항목 모두 선택

민원안내
민원신청
확인서비스
나의생활정보
이용안내
마이페이지
전체메뉴

민원신청

인터넷 민원신청

- 인터넷 신청 전체민원
- 인터넷 발급민원
- 즉시 발급민원
- 수수료 감면민원
- 인터넷 열람민원
- 법인/재외국민/외국인민원

민원폐기저지서비스

어디서나 민원

기업지원 전용창구

자주찾는 민원정보

- 주민등록표등본(초본)교부
- 전입신고
-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
- 병력증명서
- 토지(임야)대장열람 등본
-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
- 지적도(임야도)열람 등본
- 건축물대장등 초본발급

알면 도움되는 서비스

금융잔단 컨설팅
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
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
자동차 검사 예약
소비자 신고센터 신고 접수
금융주소 한번에 변경

인터넷 신청 전체 민원

민원신청서작성 > 민원바구니확인 > 수수료납부 > 신청내역확인

민원신청내역 수정

미과세 대상 목록:민원24 - Internet Explorer

http://www.minwon.go.kr/minwon/AA040_popup_localtax_migwase_info_list.jsp?elementID1=

<input type="checkbox"/>	주인세(법인세할분)
<input type="checkbox"/>	주인세(농업소득세분)
<input type="checkbox"/>	주인세(특별징수분)
<input type="checkbox"/>	주인세(재사부(구세))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재산세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재산세(건축물)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재산세(선박)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재산세(항공기)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재산세(토지)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재산세(주택)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재산세(기타)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공동재산세
<input type="checkbox"/>	자동차세
<input type="checkbox"/>	자동차세(자동차)
<input type="checkbox"/>	자동차세(이륜차)
<input type="checkbox"/>	자동차세(건설기계)
<input type="checkbox"/>	자동차세(주행분)
<input type="checkbox"/>	노역소득세

· 여러 건을 신청할 경우 민원바구니에 담으면 한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.
· 임시 저장은 회원은 일주일동안, 비회원은 브라우저 종료시까지 보관됩니다.

바로가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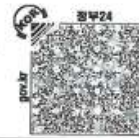
- 프로그램내려받기
- 통합설치
- 발급불가표면터목록
- 자주찾는 일문
- 민원24마라하기
- e하나라도 민원
- 무인민원 발급안내
- 인화기 대기전단
- 국민인증서등록안내
- 홍보동영상
- 고객센터
- 민원24 서비스 이용문의
- 09:00~18:00(평일)
- 1588-2188

↑ 위로

※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샘플

문서확인번호

1/1



발급번호 Issuance Number						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					
납세자 Taxpayer		성명(법인명) Name(Name of Corporation)			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 Resident(Corporation, Foreign)Registration No.						
		주소(영업소) Address(Business Office)									
상 호 Company Name				사용목적 Purpose of Use				서류제출			
과세대상 Tax Objects											
세 목 Tax Items		부과연월 Tax Year-Month		부과유형 Tax Pattern		과세번호 Tax No.		세 액 Tax Amount		비 고 Remarks	
서울특별시 2018 ~ 2019 재산세(건축물), 재산세(선박), 재산세(항공기), 재산세(토지), 재산세(주택), 재산세(기 타), 공동재산세 과세(납세) 사실 없음											
수 수 료 전자결제 민 원		위와 같이 과세(납세)사실이 없음을 증명합니다.									
		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									
										년 월 일	
		신청인 Applicant		성명(법인명) : Name(Name of Corporation)							
				주소(영업소) : Address(Business Office)							
※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This certificate does not verify the ownership of any properties.											



◆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, 정부24(gov.kr)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(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)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(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)을 하실 수 있습니다.